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년월일 : 2018.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군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1) (조례명)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에 따른 표출 및 관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

- 1)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의 표출 방법·기간·수량·거리 등의 관리기준을 정함

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11조)

- 1) 평창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의 규격, 디자인 등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개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2)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

라. 광고물등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따른 고시사항 추가(안 제12조)

1) 구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건축물 등 시설의 종류와 규모, 광고물등의 디자인을 추가함

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안 제14조)

1)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 사항을 추가함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안 제19조)

1)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자선정방법·심의 사항·기간 등의 선정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12. ~ 11. 1.)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권유(일부반영)

- 제13조 관련 우리군 옥외광고관련 전문가의 성비 불균형으로 점차적 반영 계획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7.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 2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및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

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영 제14조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4조에 따른 평창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구성·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전

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
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되고, 주민협의회 부위원장(이하 이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강원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창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의 규격, 디자인 등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외국어를 병기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광고물등의 디자인

4.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⑧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영 및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한다)의 수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
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

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

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평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지정계시시설의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현수막 지정계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정계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광고물등의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

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확정된 이후라도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 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되었을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에 따라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2호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창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평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관련)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번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사업자 소재지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제17조제3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 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제17조제4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제6항 관련)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p>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p>사 진 (3.5×4.5)</p></div> <p>평 창 군</p>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 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에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 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별지 제8호서식](제19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 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제19조제4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제3항 관련)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량	⑤ 보관 연월일	⑥ 보관 장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고

[별지 제11호서식](제20조제4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반환받고자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호	② 교육 과정명	③ 교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제22조제7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제23조제2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이하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이하	40만원
2) 면적 5.1㎡ 이상 10㎡ 이하	
- 5.1㎡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이하	90만원
3) 면적 10.1㎡ 이상 20㎡ 이하	
- 10.1㎡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이하	180만원
4) 면적 20.1㎡ 이상	200만원
- 20.1㎡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면적 5㎡ 이하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이하	40만원
2) 면적 5.1㎡ 이상 10.0㎡ 이하	
- 5.1㎡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이하	90만원
3) 면적 10.1㎡ 이상 20.0㎡ 이하	
- 10.1㎡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이하	180만원
4) 면적 20.1㎡ 이상	200만원
- 20.1㎡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이하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3만원
- 1.1㎡ 이상 2.0㎡ 이하	38만원
- 2.1㎡ 이상 3.0㎡ 이하	45만원
2) 면적 3.1㎡ 이상 5.0㎡ 이하	
- 3.1㎡ 이상 3.5㎡ 이하	50만원
- 3.6㎡ 이상 4.0㎡ 이하	60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이하	90만원
3) 면적 5.1㎡ 이상 10.0㎡ 이하	
- 5.1㎡ 이상 6.0㎡ 이하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60만원
- 9.1㎡ 이상 10.0㎡ 이하	180만원
4) 면적 10.1㎡ 이상	200만원
- 10.1㎡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0㎡ 이하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3만원
- 3.1㎡ 이상 4.0㎡ 이하	38만원
- 4.1㎡ 이상 5.0㎡ 이하	45만원
2) 면적 5.1㎡ 이상 10.0㎡ 이하	
- 5.1㎡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이하	90만원
3) 면적 10.1㎡ 이상 20.0㎡ 이하	
- 10.1㎡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이하	180만원
4) 면적 20.1㎡ 이상 50.0㎡ 이하	
- 20.1㎡ 이상 25.1㎡ 이하	200만원
- 25.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0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5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60만원
- 45.1㎡ 이상 50.0㎡ 이하	280만원
5) 면적 50.1㎡ 이상	300만원
- 50.1㎡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이하	30만원
- 면적 5.1㎡ 이상 10.0㎡ 이하	40만원
- 면적 10.1㎡ 이상 15.0㎡ 이하	50만원
- 면적 15.1㎡ 이상 20.0㎡ 이하	60만원
- 면적 20.1㎡ 이상	65만원
- 20.1㎡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
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 면적 5.0m² 이하

30만원

- 면적 5.1m² 이상 10.0m² 이하

40만원

- 면적 10.1m² 이상 15.0m² 이하

50만원

- 면적 15.1m² 이상 20.0m² 이하

60만원

- 면적 20.1m² 이상

70만원

- 20.0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0m² 이하

150만원

- 면적 10.1m² 이상

160만원

- 10.1m² 초과하는 면적 1m²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이하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9만원
나) 면적 3.1㎡ 이상 5.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이하	45만원
다) 면적 5.1㎡ 이상	50만원
- 5.1㎡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

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 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 은 자(안전점검 종사자 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체·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 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 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2,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2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2,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1,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2,000원

<p>과. 현수막</p> <p>1) 일반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² 이하 3,000원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p>2) 현수막 게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² 이하 3,000원 - 10m² 초과시 1m²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p>하. 벽보(1건) 2,500원</p> <p>거. 전단(500매당) 2,500원</p> <p>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p> <p>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p>	<p>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p>
---	---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p>나) 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p>다) 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p>라) 면적 3.0㎡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 미만</p>	<p>법 제20조 제1항제1호</p>	<p>12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67만원</p> <p>92만원</p> <p>117만원</p> <p>130만원</p> <p>15만원을 더한 금액</p>

- 0.5㎡ 이하	7만원
- 0.6㎡ 이상 0.8㎡ 이하	10만원
- 0.9㎡ 이상 1.0㎡ 미만	13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17만원
- 1.4㎡ 이상 1.6㎡ 이하	25만원
- 1.7㎡ 이상 2.0㎡ 미만	42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0만원
- 2.4㎡ 이상 2.6㎡ 이하	58만원
- 2.7㎡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면적 3.0㎡ 이상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 1㎡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이하	13만원
나) 면적 3.1㎡ 이상 5.0㎡ 이하	
- 3.1㎡ 이상 3.7㎡ 이하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0㎡ 이하	25만원
다) 면적 5.1㎡ 이상 10.0㎡ 이하	
- 5.1㎡ 이상 6.0㎡ 이하	35만원

- 6.1m ² 이상 8.0m ² 이하	50만원
- 8.1m ² 이상 10.0m ² 이하	58만원
라) 면적 10.1m ² 이상	80만원
- 10.1m ² 초과하는 면적 1m ²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3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장당 37천원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제1항제2호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50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83만원
라. 1년 이상		167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	333만원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항제5호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	
가. 1회 위반한 경우	항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2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관계법령 발췌

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

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

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併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

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

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점 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점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가.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

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

도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법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장등은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관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③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 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해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해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해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그에 유사한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해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470